

# 회비규정

제정 1998.04.04	개정 2015.10.24
개정 2006.02.11	개정 2016.10.22
개정 2008.11.15	개정 2017.04.29
개정 2011.02.11	개정 2018.12.15
개정 2013.12.14	개정 2020.09.19.

**제1조(명칭)**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(이하 “중앙회”) 회비규정이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규정은 정관 제7조에 의거 회원들의 회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입회)**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중앙회에 등록하고 소속 지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부담금)** 회원은 중앙회 운영에 필요한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 회원의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금액, 납부방법, 납부기한 등의 제반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.

**제5조(회비납부)** ① 정회원은 입회시 규정 3조에 따라 미납된 회비(입회일 기준 당해연도 포함 이전 3년분 소급)를 중앙회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보건기관, 의료기관,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하고 임상병리학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·산업대학 및 전문대학,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한 회원(근무형태 및 맡은 직무와 관계없음)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외파견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④ 수납된 회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환할 수 있다.

1. 납부 금액이 규정한 회비를 초과한 경우

2. 납부 방법에 착오가 있거나 납부 금액을 오인하여 중복 납부한 경우

**제6조(회비면제)**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관련 증빙서류 및 회비면제 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하고 소속 지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군복무자. 단 군에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외하며 일반병 의무복무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할 경우 면제

2. 미취업자 및 당해연도 3개월 미만 취업자

3.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9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연도의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.

4. 정년퇴임자. 단,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협회 임원인 경우 제외.

5. 기초생활수급자 및 개인파산자

② 회비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본 규정 5조 1항에 의한다.

③ 회비면제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로 정한다.

